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9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김재원 · 백선희 · 황운하
신장식 · 서왕진 · 정혜경
전종덕 · 차규근 · 김성원
김형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동의 발달·행동·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 수준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

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를 “제2호부터 제8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u>	<u><삭 제></u>
2. <u>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 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u>제2호부터 제8호</u> ----- ----- ----- ----- ----- ----- <u>10년 이</u> <u>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u> <u>벌금</u>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